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22
----------	------

2022년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29일 김태수 의원(찬성 16명)
2.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2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수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기피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며, 결산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 노인 및 장애인복지자금 용도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16조제1항)
-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의2)
-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운영근거,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 사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안 제1조)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근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1)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기금자산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기금 계정의 용도 확대(안 제5조~안 제6조)

-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의 사용 용도를 각각 “노인교육사업 및 민간의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및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²⁾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재 노인교육사업으로 ‘어르신 정보화교육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계정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 안 제16조의 2, 안 제16조의 3 신설)

- 본 개정안은 계정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소관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의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6조제1항은 계정별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³⁾를 반영하는 것인바, 별도 문제는 없으나

2)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최소 정원(3분의 1이상)이 개정안에서는 누락 되어 있는바 실제 위원회 운영 시 위촉직 위원이 다수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16조제2항은 계정별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자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 대표자 및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4)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으로 관련 대표자 및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6조제3항은 위원의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8조5)에서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 차례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③~⑤ <생략>

4)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⑦ <생략>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위촉 해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⁸⁾하고, 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 시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근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추가하여 기금의 공공성,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 해촉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5. 3.12 개정·시행)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2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영, 김기대, 김생환,
김재형, 김제리,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상구,
성흠제, 송아량, 이광호,
이정인, 장상기, 최웅식,
홍성룡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기피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며, 결산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 나. 노인 및 장애인복지자금 용도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5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16조제1항)
- 라.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제3항)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 16조의2)
- 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교육사업

9.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제16조제1항 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노인”을 “자활, 노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한다.

2. 자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용역·자문”을 “증인, 진술, 감정, 용역·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
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
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8조제5항 본문 중 “범위에서 수당”을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생략)</p> <p>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8. (생략)</p> <p>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생략)</p> <p>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노인교육사업</u></p> <p>9. <u>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u></p> <p>10.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u></p>

8. (생략)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신설>

2.·3. (생략)

<신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

1. 자활, 노인-----

2. 자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
----- 한 차례만 연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신설>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

1. -----
---- 증인, 진술, 감정, 용역·자문 -----

2. (현행과 같음)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들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계정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수당 ---. -----

-----.